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86
----------	-------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김형동 · 안철수 · 김소희
김위상 · 우재준 · 박상웅
박정하 · 한지아 · 서명옥
고동진 · 조지연 · 강명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리콜 등으로 사용을 마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함.

한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전기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안 부칙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① 부칙 제8조에 따라 배터리를 반납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신 설></u>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제8조의2(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① 부칙 제8조에 따라 배터리를 반납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u>